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소하천정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000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1733호, 2026.6.2. 공포, 2026.12.3.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점용료등, 변상금에 대한 금액과 징수방법을 규정하도록 함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하천관리 강화를 위하여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 신설(안 제14조의6, 별표 3)

－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마련
나. 점용료등에 대한 금액과 징수방법 신설(안 제15조의5, 별표4)

－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점용료 금액과 징수방법 마련
다. 변상금에 대한 징수방법 신설(안 제15조의6)

－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방법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진행 예정
3) 행정규제 : 협의 중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6(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계고(戒告)는 3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5(점용료등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통합특별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2. 점용료등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비해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변상금의 징수)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변상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14조의6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이행강제금 금액이 가장 큰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나. 관리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1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다. 나목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경우

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1년 이상 장기간 무단 점용한 경우

나) 위반행위로 인하여 하천의 치수 안전 및 수질 보전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2)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이행강제금 금액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6조제1항	300
나. 법 제17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	
1)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하천을 점용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경우		1,000
2)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경우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700
3) 그 밖의 사유로 제17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500

점용료등 산정기준 (제15조의5제1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土石)·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하천시설의 점용	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4. 선박 등의 운항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월액 20,000원 2) 을지: 월액 10,000원 3) 병지: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나. 5톤 이하 유선 <table border="1"><thead><tr><th>지역등급</th><th>동력선</th><th>무동력선</th></tr></thead><tbody><tr><td>1) 갑지</td><td>월 100,000원</td><td>월 50,000원</td></tr><tr><td>2) 을지</td><td>월 60,000원</td><td>월 30,000원</td></tr><tr><td>3) 병지</td><td>월 20,000원</td><td>월 10,000원</td></tr></tbody></table>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 마.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1) 50톤 미만 : 월액 40,000원	지역등급	동력선	무동력선	1) 갑지	월 100,000원	월 50,000원	2)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3)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지역등급	동력선	무동력선											
1) 갑지	월 100,000원	월 50,000원											
2)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3)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2)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월액 50,000원 3)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월액 70,000원 4)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월액 90,000원 5) 300톤 이상 ~ 400톤 이하: 월액 110,000원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000원씩 가산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예선,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사.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다.
5. 토석·사력의 채취	가. 해당 시·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 평균값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6.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7.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도선의 모선을 포함하며,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운동장·폴장·대기장 및 탈의장(매점을 포함한다)	토지가격의 5/100
8.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비고 1.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시·도지사는 위 기준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3.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5.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4조의6(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계고(戒告)는 3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5조의5(점용료등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2. 점용료등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비해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6(변상금의 징수)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변상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연 락 처	(044) 205 - 5144